

제 1357 호

1987.5.1

발행처: 서울특별시공무보
발행인: 공보관 김성환
전화: 791-8111-3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산동 1가 11-1
전화: 795-3387



시보

차 례

○ 조 례	
제 2175 호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개정조례	3
제 2176 호 : 서울특별시한국전력공사에의한시계외부연계용배관조례개정	6
제 2177 호 : 서울특별시공공시설소유자등차회차내연계시설관리규칙개정조례	7
제 2178 호 : 서울특별시제조제품개정조례	7
제 2179 호 : 서울특별시한국방송공사에의한시계외부연계용배관조례	11
제 2180 호 : 서울특별시방송통신중계소용합동구분시계외부연계시설관리규칙개정조례	12
제 2181 호 : 서울특별시국민연립관리공단에의한시계외부연계용배관조례	13

<어린계속>

공									
합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보시로서와 다르다.

서울특별시

제 2182 호 : 서울특별시 사립교육시설에 대한 시설개선지원에 관한 조례	14
제 2183 호 : 서울특별시 국가유공자단체 등에 대한 시설개선지원에 관한 조례	15
제 2184 호 : 서울특별시 주차강제환원시설 개선면제에 관한 조례	16
제 2185 호 : 서울특별시 산업체 부설 학교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18

◎ 규 칙

제 2177 호 :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18
-------------------------------------	----

◎ 훈 령

제 646 호 : 서울특별시 하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 중 개정규정	20
------------------------------------	----

◎ 고 시

제 298 호 : 사료성분등록	24
------------------	----

◎ 구 고 시

용산구제 17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 유치원) 실시계획공람	25
서대문구제 115 호 :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변경	25

◎ 사 령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 조례를 이어 공포한다.

1987.5.1

서울특별시시장 엄보현 인

◎ 서울특별시조례제 2175 호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동조제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배수선비"라 함은 하수통 공중 하수도계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저, 물받이등의 설비를 말한다.

5. "오수하수도"라 함은 오수만을 내재 또는 처리하기 위한 도관 기타 공작관과 시설의 총체를 말한다.

제5조제1항중 "계속"을 "계조"로 한다.

제6조중 "공유도로상"을 "공유지안"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색대별 또는 건축단위별"을 "색대별, 건축단위별"로 한다.

또는 배수 관경별로 한다.

제1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 2 (대형공사에 따른 책임)

시장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공사 시행에 관하여 다른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대응책임을 당해 공사 감독인이 된다.

제11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된 배수설비는 시장이 관리한다.

제4장의 제목 "요금등"을 "사용료, 검용료 및 부담금"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중 "오수의양"을 오수의 양과 업종"으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사용하지 아니하고 배출되는 배출수중에서 오수로 볼 수 없는 우수 또는 지하수는 사용료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동일 시설안에서 분리가 불가능한 오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오수의 종류에 따라 구분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검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당해 연도의 검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연액으로 산정하되, 검용기간이 1월미만인 때에는 일액

으로 재산한다.
제 19 조 제 4 항중 “점용료를 “물”
“부담이득금을”로 한다.

제 20 조 제 1 항 제 1 호중 “50 % -
100 % ”를 “2 분의 1 이상” 으로
하고, 동조제 2 항중 “당해 비용의 전
부”를 “당해비용의전액”으로 한다.

제 21 조 제 1 항중 “10 %”를 “9.6
퍼센트”로 하고, 동조제 2 항에 단서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체기간이 1월 미만인 때에는
는 1월로 산정한다.

제 23 조의 제목 “이의신청”을 “부과액조
정신청”으로 하고 동조제 1 항중 “10일”
을 “30”로 “이의신청”을 “부과액조정
신청”으로 하며 동조제 2 항을 다음과 같
이 한다.

- (2) 시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과
액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
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
하여야 한다.

제 27 조 제 1 항 제 3 호중 “위반한 자”
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제 27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7 조의 2 (사용의 제한) (1) 시장은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내
하여 일정기간 그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 (2) 시장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내용을 상
당기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후
공고도 할수 있다.

제 28 조에 제 21 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한다.

- 21. 제 21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사
유의 제한

제 29 조제 1 항본문중 “과태료를 부과
한다”를 “과태료에 처한다”로 하
고 동항제 1 호중 “아니한 자”를
아니하고 제 5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
한 기간내에 배수설치의 신청도 아
니한자”로 하며, 동항 제 2 호중 “제
4 조제 1 항”을 “제 4 조”로 하고,
동항 제 6 호중 “위반하여”를 “위
반하거나 불복하여”로 하며 동조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2)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
으로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징수를 연할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추정하는 외에 면할한 금액의
5 배의 범위안에서 과태료를 부과
(별표 1) 중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조에는 공포한 날로부
터 시행한다.
- (2)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에시
행전에 행하여진 위반행위에 대하여
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나. 하수도사업종 구분

업종	구분	내용
일반용	일반 1종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제 1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발전소,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법령의 수명장을 제외한다) 제 3종 및 제 4종 (안마시술소의 한한다) 해당업종 사용자
	일반 2종	다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 사용자
	일반 3종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제 4종 (안마시술소 제외) 해당업종 사용자
공공용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제 5종 및 제 6종 해당업종 사용자,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비정리수영장, 교외, 사찰
공중용		서울특별시 급수조례에 규정된 급수종별 제 7종 해당업종 사용자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중 시장이 정하는 수용시설, 경로당, 탁아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업종 사용자
산업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체 발전소 두께제련업소
<p>사용수: 상수도수, 지하수 및 기타수 (하천유수물 포함하되, 산업용은 공업용수로 쓰여지는 하천유수물 포함한다)</p>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시 한국전매공사에대한신채과세면제에
관한조례제정 조례물 이에 공포한다.

1987년 5월 1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 서울특별시조례 제 2176호

서울특별시한국전매공사에대한신채
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매
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매
공사의 경영합리화와 전매사업의 건
전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
방세법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
하여 시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면제대상) ① 한국전매공사가
그 소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을 재산에 대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
다. 다만, 취득 또는 등기일로부터
1 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용 부동산을 그 소유의 업무
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 한국전매공사가 그 소유의 업무
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
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 3 조 (사무처리의 위임)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에 관한 사
무는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
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
한다.

제 4 조 (면제신청등) ① 제 2 조의 규
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
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수 있을 때에
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
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
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
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로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88 년
12 월 31 일 까지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군장성급 소유자등록의 과세면제에 관
한 특별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1987년 5월 1일
서울특별시장 임보현

◎서울특별시조례 제 2177 호

서울특별시군장성급소유자등록의과세
면제에 관한특별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군장성급 소유자등록의
과세면제에 관한 특별조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 1 조 중 "국방과학연구소에 공하는 권
구원(국방과학연구소법의 규정에 의
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를 국방
에 관련된 연구용에 공하는 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및 한국국방
연구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방연구원"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로부터 시행한다.
2. (시행기간) 이 조례는 198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 세조개정령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년 5월 1일
서울특별시장 임보현

◎서울특별시조례 제 2178 호

서울특별시세조개정령

서울특별시세조개정령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 3 조 제 10 호를 제 11 호로 제 11 호
를 제 12 호로 제 12 호를 제 13 호로
하고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토지과다보유세
- 제 13 조의 3 중 "법 제 110 조의 3 제
4 항 제 2 호에서"를 "법 제 110 조
의 4 제 2 항 제 2 호에서"로 한다.
- 제 13 조의 3 제 1 항 중 "법 제 110 조
의 3 제 5 항에서"를 "법 제 110 조
의 4 제 2 항 제 3 호에서"로 한다.
- 제 14 조 제 2 항 제 1 호 "백년 8 월 1
일"을 "백년 1 월 1 일"로 한다.
- 제 20 조의 2 중 "법 제 128 조의 2 제
4 항에"를 "법 제 128 조의 3 제 2
항 제 1 호에"로 한다.
- 제 27 조 중 "생체보존대상자"를 "보
호대상자"로 한다.
- 제 27 조의 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7 조의 2 (주민세의 납기) 주민세의 보통징수의 납기는 매년 5월 16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31 조의 2 중 "법 제 184 조의 2 제 4 항에"를 "법 제 184 조의 3 제 2 항 제 6 호에"로 한다.

제 31 조의 3 중 "법 제 184 조의 2 제 5 항에"를 "법 제 184 조의 3 제 2 항 제 7 호에"로 한다.

제 32 조 중 "다만, 비주거지역(건용공업지역, 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을 제외한다) 내의"를 "다만, 공업지역(건용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비주거지역 및 주거지역내의"로 한다.

제 3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33 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과세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다음과 같다.

과세대상	과세기준일	납기
토지, 광구 전축물, 선	매년 5월 1일	6월 16일~
		6월 30일
바, 항공기	매년 9월 1일	10월 16일~
		10월 31일

제 34 조 제 2 항 및 제 3 항을 삭제한다.

제 4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9 조 (증감예납) ①영 제 162 조의

규정에서 "연 2 회 시·군조별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같다.

1. 제 1 기분: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 제 2 기분: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 ②농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제 1 항에서 규정한 납기내에 발생한 농지소득을 근거로 구청장이 산출하여 통지한 농지세액을 다음 기간에 증진예납하여야 한다.
1. 제 1 기분: 8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 2 기분: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제 11 절 도시계획세"를 "제 12 절 도시계획세"로 하고 제 11 절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1 절 토지과다보유세

제 67 조의 2 내지 제 67 조의 8 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67 조의 2 (납세의무자) 토지과다보유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 제 234 조의 22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는 토지과다보유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 67 조의 3 (과세표준)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표준은 법 제 234 조의 26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으로 한다.

제 67 조의 4 (세율) ① 토지과다보유세는 법 제 234 조의 26 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p>(과세표준)</p> <p>3천만원이하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p> <p>5천만원이하 : 15만원 + 3천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10</p> <p>1억원이하 : 35만원 + 5천만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15</p> <p>2억원이하 : 110만원 + 1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20</p> <p>3억원이하 : 310만원 + 2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25</p> <p>5억원이하 : 560만원 + 3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30</p> <p>7억원이하 : 1,160만원 + 5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35</p> <p>10억원이하 : 1,860만원 + 7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40</p> <p>15억원이하 : 3,060만원 + 10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45</p> <p>15억원초과 : 5,310만원 + 15억원초과금액의 1,000분의 50</p> <p>2) 납세의무자가 법 234 조의 31 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 불이행 등으로 주민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알수없이 다른 토지와 합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합산하지 못한 토지에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산정세액으로 한다.</p> <p>제 67 조의 5 (과세기준일 및 납기)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p>	<p>5월 1 일로 하고 납기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 일까지로 한다.</p> <p>제 67 조의 6 (신고의무) 1)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토지의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로부터 15 일간내에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지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소유자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로 신고된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 토지에 변동이 없는 경우의 그 다음해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2)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토지가 소유권의 변동 기타 사유로 인하여 토지과다보유세의 과세대상토지가 제외되어야 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제 1 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p> <p>3) 제 1 항 및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p> <p>제 67 조의 7 (신고의무 불이행시의 과세표준가산)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법 제 234 조의 31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하여는 법 제 234 조의 26 의 규정에 의한 가액 법 제 111 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10 에</p>
---	---

해당하는 금액을 그 가격에 가산한 금액을 당해 토지의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 67 조의 8 (대상토지의 용지 및 이의 신청) 1) 구청장은 과세기준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 토지를 그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람하여야 한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거나 공람한 토지과다보유세 과세대상 토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토지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3)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당해 토지가 토지과다 보유세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68 조중 "납기개시일"을 "과세기준일"로 "법제 182 조제 1 호 및 제 2 호의"는 "법제 182 조의"로 한다.

제 70 조제 2 항중 "납기개시일"을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 73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73 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기준

일 및 납기로 한다.

제 74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74 조 (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도시계획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제하고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 12 절 소방공동시설세"를 "제 13 절 소방공동시설세"로 한다.

제 79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79 조 (과세기준일 및 납기) 소방공동시설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는 건축물 및 선박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로 한다.

제 80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80 조 (납세고지 및 부과징수) 소방공동시설세의 납세고지는 재산세의 고지서에 병기하여 고제하고, 부과징수는 재산세 부과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 13 절 사업소세"를 "제 14 절 사업소세"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 14 조제 2 항 제 1 호의 개정규정은 1988 년 1월 1일부터, 제 11 절 제 67 조의 2 내지 제 67 조의 8의 개정규정은 지방세법등 개정법률 (1986.12.31.

법령 제 3878 호 1의 공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공한지 및 임입의 기업부용토
격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지방세
법 제 188 조 제 1항 제 1호 제 3목,

중건의 조례 제 34 조 제 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공한지 및
임입의 기업부용토격에 대한 재산
세의 부과기준은 부칙 제 1항 단
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 11 조의 개
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3) (토지등감 가격기준일 적용례)

중건의 제 14 조 제 2항 제 1호의 규정
에 의한 토지등감가격 기준일은 부칙
제 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 동항
의 개정규정이 시행될 때까지는 종
전의 규정에 의한다.

4)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일 이전에 부과되었거나 부과하
야 할 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
시 한국방송공사의 명칭 시정확정
등에 관한 조례를 아예 공포한다.

1987. 5. 1

서울특별시청 명 보 원

서울특별시조례 제 2179 호

서울특별시한국방송공사에대한시정확
정등에관한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방송
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의 운영과 운영상업등에 대한 부가
를 적당하게 부과하여 지방세법 제 7
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의
부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면제대상) 1) 공사가 그 소유
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 또는 등기일로부터 1
년이내에 상당할 사유없이 당해
사업용부동산을 그 소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
한다.

2) 공사가 그 소유의 업무에 직
접 사용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
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 3 조 (사무처리외의 취급)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면제에 관한 사
무는 당해 과세 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
리한다.

제 4 조 (면제신청등) 1) 공사가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용 등

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다.

2) 구청장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할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적용시한) 제 2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등부세면제는 198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하며 동조 제 2항의 재산세 면제는 198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방송통신중계소통합에 따른 시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 5. 1.

서울특별시장 임 보 현

◎서울특별시조례 제 2180 호

서울특별시방송통신중계소통합에 따른 시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방송통신중계소의 통합운영을 위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이관되는 방송통신중계소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 7조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면제대상) 공사가 방송통신중계통합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와 주식회사문화방송으로부터 이관받는 방송통신중계소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과 등부세를 면제한다.

제 3조 (불균일 과세대상) 공사가 방송통신중계소통합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방송공사에서부터 이관받거나 무상으로 사용함을 적용받아 직접 사용하는 방송통신중계소시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 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재산세액의 100분의 50을 감감한다.

제 4조 (사무처리의 위임) 제 2조 및 제 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당해 과세대상외의 손익지를
분할하는 구성장에게 위임하의 처리
한다.

제 5 조 (면제신청등) 1) 제 2 조 및
제 3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구
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
청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
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
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2) 구청장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적없이 이를 조
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6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로부터 시행한다.

2)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0 년 11
월 31 일까지 시행한다. 다만, 제 2 조
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의 과
세면제는 1988 년 12 월 31 일까지 직
용한다.

관부총리의 승인한 연은 서울특별시
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시세과
세면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1987. 5. 1

서울특별시장 임보현 ②

서울특별시조례 제 2181 호

서울특별시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의 생
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민연
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
연금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지방법 제 7 조 제 1 항
의 규정내 의하여 시세의 과세면제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면제대상) 1) 공단이 그 고
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 또는
등록일로부터 1 년이내에 정당한 사
유없이 당해 증산한 그 고유의 업
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면제된 취득세 또는 등록세를
추징한다.

2) 공단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복합 면제
한다.

제 3 조 (사무처리의 위임) 제 2 조의 규

정에 의한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 4 조 (면제신청등) 1) 공단이 제 2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 면제할 수 있다.

2) 구청장이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적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단이 설립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적용시한) 제 2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며 동조 제 2 항의 과세면제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구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 5. 1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

◎서울특별시조례 제 2182 호

서울특별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 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교육법에 의한 사회교육시설(이하 "사회교육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 7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면제대상) 1)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및 건축물의 대략적인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 또는 등기일로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토지 및 건축물을 사회교육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사회교육시설로서 그 사회교육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작성세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공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시설을 다른 용도에 전용하는 경우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공익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전용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설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조 (사무총리의 위임)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당해 과세대상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 4조 (면제신청등) 1)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2) 구청장이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직권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2) (적용시한) 제 2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동조제 2항의 과세면제는 199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구청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국가유공자단체등의위한시책과세면제에관한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1987년 5월 1일
서울특별시장 임보권 인

◎서울특별시조례 제 2183 호

서울특별시 국가유공자단체등에
대한 시책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단체등의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 7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과세면제) 지방세법 제 184조의 2 제 2항 제 3호 내지 제 11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에 대하여는 도시계획세와 소방공공시설세를 면제한다.

제3조(사무처리의 위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파견면제에 관한 사
무는 당해 파견대상 소재자를 판
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4조(면제신청등) 1) 제2조의 규
정에 의하여 파견면제를 받고자하
는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파
견면제 및 불응일파견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
우라도 직권으로 파견면제 할 수
있다.

2)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
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
청인에게 봉지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
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로부터 시행한다.
- 2) (시행기간)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정률 제외하고는 1991년 12월 31
일까지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시주차장에대한시제파견면제에관한조례

를 이에 공포한다.

1987년 5월 1일
서울특별시장 영고영

◎서울특별시조례 제2184호

서울특별시 주차장에 대한 시제파견
면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
시에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주차전용 시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착
상세·도시계획세·소방공용시설세
및 사업소세의 파견면제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①주차장법 제12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의주
차장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주차
대수 100대 이상의 주차전용시설
(건축물, 기타시설물과 그 부속토
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
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
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토지등을 취득한 후 2년이
내에 주차전용시설의 설치에 착수
하지 아니하거나 착수후 2년이내
에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면적을

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주차 영업개시일로부터 5년이내에 상당한 사유없이 주차전용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주장한다.

②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은 자가 주차대수 100대 이상의 주차전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주차전용시설에 대하여는 주차전용시설을 광공한 날로부터 5년간 저산세·도시계획세·소방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주차전용시설의 착공일로부터 2년이내에, 준공검사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주차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차영업을 개시한 후 5년이내에 상당한 사유없이 주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이미 면제된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및 사업소세를 주장한다.

제3조(사후처리의 위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사후처리는 당해 과세과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4조(면제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

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과세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구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세과세 면제는 1983년 12월 31일까지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외주차장 설치허가를 받은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산업직 부설학교에 대한 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등 제정 조례물 이에 공포한다.

1987. 5. 1

서울특별시장 박모현 인

◎서울특별시조례 제 2185 호

서울특별시 산업체 부설학교에 대한
시생과제면제에 관한 조례등 폐지조례

- 아래의 조례를 각각 폐지한다.
- 서울특별시 산업체 부설학교에 대한 시생과제면제에 관한 조례 (조례 제 1961 호)
 - 서울특별시 수도권내 공단에 대한 시생과제면제에 관한 조례 (조례 제 2057 호)
 - 서울특별시 정부출자법인에 대한 등목세 불균일과제에 관한 조례 (조례 제 1728 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규 칙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중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7. 5. 1

서울특별시장 염보현(인)

◎서울특별시규칙 제 2177 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
칙 개정규칙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3 조제 1 항중 "지하수, 하천수등의
사용자"를 "지하수, 하천수등을 동
일한 업종에 사용하는 동일사용자
로하고, 동조 제 2 항 및 제 3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육내 누수등의 사용로 인하여 공
공하수도도 배출된 하수의 양은 조
점량에서 제외한다.

③업종을 달리하는 2이상의 업소가
지하수, 하천수등을 동일한 양수시설
에 의하여 급수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사용로의 산정은 조례 제 15 조제 2 항
의 규정에 의거 주된 오수의 종류에
따라 구분된 업종의 요율에 따른다.
다만, 업종을 달리하는 2이상의 업소
가 각각 다른 양수시설에 의하여 급
수하거나 업종별로 급수량을 계속할수
있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7 조제 1 항중 제 7 호를 제 9 호로 하
고, 동항에 제 7 호 및 제 8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하매설물 또는 지하구조물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를 사용량적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그대로 배출하는 경우

8.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우수 또는 지하수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에 그대로 배출하는 경우 제 20 조 중 제 2 항을 제 3 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 2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별표 2의 과대료율 면한 요금의 산정은 실제 사용한 양에 의거 산출된 사용료에서 기 신고한 사용량에 의거 산출된 금액을 뺀 자액으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 8 호 서식)의 처리기한란 중 "7일"을 "3일"로 하고 첨부 서류란 중 "2. 공사현장도면"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2) 과 대 료 처 분 기 준 표

위 반 사 항	해 당 조 문	과 대 료	
		조례 제 29 조 1 항	조례 제 29 조 제 2 항
1. 배수설비시설대만	조례 제 3 조 제 1 항	· 가사용전용자 10만원 · 기타사용자 50만원	
2.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애를 주는 공사행위자	조례 제 4 조	· 가사용전용자 10만원 · 기타사용자 50만원	
3. 배수설비관리대만	조례 제 11 조 제 2 항	· 가사용전용자 10만원 · 기타사용자 50만원	
4. 공공하수도 사용 개시신고 대만	조례 제 12 조 제 1 항	· 가사용전용자 10만원 · 기타사용자 50만원	· 가사용전용자 : 면한요금의 2 배 · 기타사용자 : 면한요금의 4 배
5. 공공하수도 일	조례 제 13 조	· 가사용전용자 10	· 가사용전용자 :

위 반 사 항	해 당 조 문	과 책 료	
		조례 제 29 조 1항	조례 제 29 조 제 2항
시 사용자가 신고 배만		만원 · 기타사용자 50만원	면한요금의 2 배 · 기타사용자 : 면한요금의 4 배
5. 특수증지 처분 중 임의해계 사용	조례 제 27 조 제 1항	· 가사용전용자 10만원 · 기타사용자 50만원	· 가사용전용자 : 면한요금의 2 배 · 기타사용자 : 면한요금의 4 배
7. 허위기타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 전용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를 면한 자	조례 제 29 조	· 가사용전용자 10만원 · 기타사용자 50만원	· 가사용전용자 : 면한요금의 2 배 · 기타사용자 : 면한요금의 4 배

* 제 29 조 제 1항 및 제 2항의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훈 령

서울특별시 하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중 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87년 5월 1일
서울특별시장 염보현 ㉔

㉔**서울특별시 훈령 제 646 호**

서울특별시 하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
중개정규정

서울특별시 하수도 과징 사무처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2 제 1항중 "납기마감일로부터 1개월이 지난후까지"을 "납부마감일까지"

지"으로 한다.
제 30 조 제목 "이의신청"을 "부과액조정신청"으로 제 1항중 "이의신청"을 "부과액조정 신청"으로 하고 제 30 조 제 1항의 제 29 호 서식과 제 30 조 제 2항의 제 30 호, 제 31 호 서식용 필지와 같이 한다.
제 31 조 제목 "이의신청"을 "부과액조정"으로 하고, 제 31 조중 "이의신청"을 "부과액조정"으로 한다.
제 38 조 제 1항중 "입회하여야 한다"을 "입회할 수 있다"으로 한다.

부 칙

1. (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날로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이 규정 시행일 다음달 제납금액부터 적용한다.

(제 29 호서식)										
부과액조정신청사항조사서										
부 과 액 정 신청 자	주 소		구 등 번의 호 농 반							
	상 명							업 계 명		
	하수번호		부과액 조 정		신청일자		접수번호		비 고	
				19 . . .		조				
이 의 내 용	년도	남기	조정량	남부고지액	부과액 조정 신청사유					
조 정 경 위	조정일자	수요가산고량	조정량	조정량	남기	조정경위				
						과 정 원 적 성 디 ㉔				
조 사 내 용										
조 사 자 의 견										
조 사 자	19 . . .		직명		성명		: ㉔			

(제 31 조서식)

결 정 서

투가액 조정신청서

- 처분청

위 당사자간

처분사건에 관하여

39 . 부과액조정 (신청자로부터 청구가 있었기 이를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주 문

이 유

252

고 시

◎ 서울특별시 고시제 298 호

사료 성분 등록
 사료관리법 제 22 조 제 3 호의 규정에
 의거 사료 성분 등록 사항을 아래와 같

이 고시한다.

1987.5.1

서울특별시 장

1. 제조업체명: 서울식품공업주식회사
2. 대표자: 서정택
3.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연동동 193-3

4. 사료의 종류 및 명칭

등록번호	사료의 종류	사료의 명칭 또는 용도
5-154	대용유	축우용 대용유 3호
5-155	"	" 대용유 4호
5-156	"	양돈용 대용유 2호
5-157	"	" 대용유 3호
5-158	"	대용 탈지 분유

5. 사료의 성분량

등록번호	조간백질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회분
5-154	23%이상	8%이상	1%이상	0.7%이상	3%이하	10%이하
5-155	20%이상	8%이상	1%이상	0.7%이상	3%이하	10%이하
5-156	23%이상	5%이상	0.8%이상	0.6%이상	5%이하	10%이하
5-157	20%이상	5%이상	0.8%이상	0.6%이상	5%이하	10%이하
5-158	30%이상	5%이상	-	-	5%이하	10%이하

등록번호	비타민 A	항생제
5-154	25,000 Iu/kg 이상	에리스트 마이신 20mg/kg
5-155	"	"
5-156	"	10mg/kg
5-157	"	"

구 고 시

◎서울특별시용산구공고제 17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유치원) 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00 호 (87.2.18) 을 변경 결정 및 같은고시 제 186 호 (87.3.18) 로 지적승인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천동 산1의 일대 대지: 9,689.40 ㎡상에 도시계획사업 (학교:유치원)을 시행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 27조의 2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실시 계획을 공람 공고한다.
2. 관계도서는 용산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한다.

1987.5.1

용 산 구 청 장

-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산천동 산1의 8일대
- 나. 사업의종류: 도시계획사업 (학교:유치원) 시행허가
- 다. 명 칭: 제정유치원
- 라.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1) 대지면적: 9,689.40 ㎡
 - 2) 총건축면적: 3,547.82 ㎡
 - 3) 규 모: 지하 층~지상 4층

마.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1) 주소: 서울특별시중구명동 2가 1의 6

2) 명칭: 재단법인 천주교 생활수도원 유지재단

3) 대표: 서 정 열

바. 사업기간: 87.5-88.3.30

사.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아. 사유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이의의 권리명세 (생략)

자. 토지 소유자라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구절에 의한 관직인 주소, 성명 (생략)

차. 기타 상세할 사항은 용산구청 도시정비과 (713-2737)로 문의바람 (관계도서 생략)

◎서대문구고시제 115 호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허가변경

1. 서울특별시고시 제 146 호 (86.3.11)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 2 호 (87.1.10) 도 도시계획사업 (학교) 시행 허가된 명지남녀고등학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동법시행령 제 27 조의 2과 서울특별시 조례 제 2126 (86.12.18) 권한위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시행허가 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대문구청 도시정비과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7.5.1

서대문구청장

1) 허가사항

가. 사업시행지: 서대문구홍은동 361-28 외 13 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 계획사업(학교)시행, 명지남녀 고등학교 체육관 증축

다. 준공예정일: 87.6.30

라. 사업시행면적 당초: 5,010.75 ㎡

변경: 5,304.75 ㎡

마. 건물면적: 4,498.5 ㎡

바.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3층, 지하 1층)

사. 건물용도: 체육관

사 령

◎ 1987년 5월 1일자 평제 128 호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지방건축기사 성범계

건축지도과 기획관리실파견(대단위사업접점요원)('87.5.1-'87.10.31)

건축지도과

지방건축기사 이상열

중구, 근무를 병합

건축지도과
지방건축기사 권창주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근무를 병합

중구
지방건축기사 임상균
서대문구, 근무를 병합

종합건설본부
지방토목기사오 한형록
기획관리실 파견(대단위사업접점요원)
('87.5.1-'87.10.31)

평제 129 호
남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
지방기계원(8등급) 방병일
차량정비사업소 근무를 병합

남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
지방기계원(8등급) 강영
한강관리사업소 근무를 병합

남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
지방기계원(8등급) 최상철
동부건설사업소 근무를 병합

남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
지방기계원(8등급) 박영철
남부건설사업소파견(87.5.1-8.31)

남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
지방기계원(8등급) 이영훈
서부건설사업소파견(87.5.1-8.31)

<p>남지도쓰레기종합처리사업소 지방거처원 (9동급) 이 재 덕 남부건설사업소파견 (87.5.1-8.31)</p> <p>◎ 1987년 4월 30일 령재 130호 구로구</p> <p>지방행정주사 정 신 남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9호봉에 급함 구로구 근무를 명함</p>	<p>은평구 지방행정주사 최 중 선 지방행정사무관에 임함 9호봉을 급함 은평구 근무를 명함</p> <p>종합건설본부 지방거처기사 윤 경 수 지방거처기사에 임함 9호봉을 급함 종합건설본부 근무를 명함</p> <p>서울특별시장</p>
<p> </p>	